

(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검토보고서-참조2)

제 138회 임 시 회
2006. 8.24(목)14:00

성남시의회 제138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
회 의 규 칙 개 정 안 검 토 보 고 서



의 회 운 영 위 원 회

(전문위원 한신수)

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검토보고

의안번호	1683
------	------

□ 제안이유

- 성남시의회 위원회조례가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조례로 조례명칭이 변경되면서 정당교섭단체에 관한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회의규칙의 일부사항을 개정하고자 함

□ 주요골자

- 의장은 의원의 의석배정, 의사일정변경 등을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하여 정함(안 제3조, 제17조)
-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 매년 1월 10일 까지 의회의 연간 운영의 기본일정을 정함(안 제7조의2 신설)
- 의장은 직무 중 의사운영, 의회기관 및 조직과 관련되는 사항, 중요행사, 대외협력업무 등 의회운영과 관련한 주요업무는 사전에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(안 제9조의2)
- 5분 자유발언과 집행부에 대한 질문에 관한 사항 등은 의장이 각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(안 제31조의2)
- 시장 등의 출석요구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,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(안 제66조)
- 의장은 시정질문 및 보충질문 시간, 질문자수, 질문순서 등을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함(안 제66조의2)
-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 및 긴급현안질문 신설(안 제68조의2 및 제68조의3 신설)
- 의원의 징계에 관한 심사를 “징계자격특별위원회”에서 “윤리특별위원회”로 변경(안 제82조, 제85조, 제86조)

검 토 의 견

□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개정 법적근거 판단

- “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”가 제1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(2006. 7. 24)에서 의결 2006. 8. 14일 공포시행 됨에 따라 교섭단체 구성과 관련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의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타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음
- 이는 경기도내 31개 시·군 중 우리시의회가 최초이며, 향후 타시·군 의회의 규칙개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됨

□ 회의규칙 주요 개정 내용 판단

- 개정안은 의원의 의석배정, 의사일정변경, 의장직무 중 의사운영, 의회기관 및 조직과 관련되는 사항, 중요행사, 대외협력업무 등 의회운영과 관련한 주요업무는 의장이 사전에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토록 함으로써 정당의 책임정치구현의 의지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
- 따라서 의원 개개인 의정활동을 조율하여 전체의원의 의사로 의정에 반영하여왔던 의장 권한의 상당부분이 교섭단체 대표와 사전협의를 의해 이루어짐으로서 협의기간 확보와 의원개인의 의정활동 보다는 당론이 우선 될 수 있다는 측면도 있으나
- 그동안 의장이 행사하였던 일부 의사결정에 대하여 교섭단체대표 의원간의 사전협의를 통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, 공론화된 정당정책이 빠르게 시정에 반영되어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측면도 있다고 판단됨